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0일 07시 28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대지 안의 공지기준	3

대지 안의 공지기준

2014.04.17 조회수 751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49
담당부서	건축과
상위법령	건축법 제58조
조례	여수시 건축 조례 제33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주택건축도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1999-10-23
규제시행/폐지일	1999-10-23
규제내용	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(처마끝, 발코니 및 계단을 포함한다)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48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0

Yeosu Web Contents

